



제428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
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섬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〉

■ 서삼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009호)

2025. 8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순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서삼석의원 등 15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6. 23.
3. 회부연월일 : 2025. 6. 2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은 3,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세계 10대 섬 보유국으로 불리며 다도해상 국립 공원 등 다채로운 섬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
하지만 한국 섬진흥원이 2023년 실시한 ‘지속가능한 섬 관광 정책 방향 연구’에 따르면 국내 섬 관광 시설은 94개 섬에 273개에 불과하고 관광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섬은 374곳에 달하는 등 섬이 보유한 관광 자원과 가치에 비해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는 부족한 현실임.

또 현행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6조제3항제6호의2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「섬 관광 활성화 대책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섬 관광 대책 시행 근거도 사실상 전무함.

이에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,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활성

화를 통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
임(안 제13조의4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섬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 4 신설)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3조의4(섬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세제 지원, 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, 교통편의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¹⁾

1) 「섬 발전 촉진법」

제13조(세제 지원)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(稅制) 지원을 할

섬지역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하여는 시·도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²⁾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19년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「섬 관광 활성화 대책」이 수립된 이후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등 관련 정책이 단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개정안은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섬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을 증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섬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.

수 있다.

제13조의2(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공공기관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(교통편의 증진 지원)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·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.

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) 「섬 발전 촉진법」

제6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6의2.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

특히 섬지역의 관광산업은 섬지역에서 농업과 어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유형으로서 섬 주민들은 관광업의 활성화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으며,³⁾ 최근 섬지역은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등 섬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임.

[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사업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]

(단위: 건, 억원)

산업 분야	당초 계획 (18~27년) 사업비	추진 실적 (18~24년)		25년 추진 계획	
		사업수	사업비	사업수	사업비
소득증대·일자리	4,571	925	2,887	114	465
복지·문화·의료·교육	541	62	179	5	28
교통개선	2,487	127	1,940	13	113
관광활성화	2,814	367	1,703	35	204
주민 정주여건 개선	4,250	677	2,761	77	467
마을환경개선 패키지	467	25	172	4	18
특성화산업	-	133	531	36	129
계	15,132	2,316	10,713	284	1,424

※ 자료 : 행정안전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2025년 연도별 사업계획

이와 관련하여, 행정안전부는 「제4차 섬발전종합계획」에 따라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,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접근성

3) 육수현, 「섬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」, 한국섬진흥원, 2023.07.

을 개선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⁴⁾

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섬지역의 발전을 위한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50

-
- 4) - 인천광역시는 섬지역 접근성 개선 및 해상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타 시·도 주민이 비연륙 25개섬에 1박 이상 체류하며 편도 정규운임이 10,000원 이상인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정규운임의 70%를 할인해주는 ‘인천 i 바다패스’ 사업을 추진중임.
- 경상남도과 진라남도는 2025년 「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섬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섬 관광 콘텐츠 개발, 인프라 확충,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